

공역관리업무지침

제정 2003. 12. 30 항공교통관제소훈령 제57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항공법 시행령 제15조의6 규정에 의한 운영세칙 제5조 제4항의 공역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 운영과 인천비행정보구역 내의 공역관리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인천비행정보구역내의 공역관리업무에 이를 적용한다.

제3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공역관리업무에 관하여는 항공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항공안전본부의 훈령, 고시 및 지시 또는 다른 관련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훈령에 의한다.

제4조(다른 기관과의 관계) ①지방항공청과 관련된 공역관리업무에 대하여는 항공안전본부의 지시 또는 지방항공청과의 협의결과에 따라 처리한다.

②군 기관이 관련된 공역관리업무에 대하여는 해당 군 당국과의 협의결과에 따라 처리한다.

제5조(용어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항공법 제2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다음과 같다.

1. “공역관리업무”라 함은 한정된 국가 자원인 공역에서 안전하고 신속한 항공항행을 지원하기 위한 효율적인 공역관리의 제반활동을 말한다.
2. “영구공역”이라 함은 공역의 사용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동일 목적으로 계속적으로 사용되는 일정한 수평 및 수직범위의 공역을 말한다.
3. “임시공역”이라 함은 3개월 미만의 기간을 정해놓고 사용하는 일정한 수평 및 수직범위의 공역을 말한다.
4. “특별사용공역”이라 함은 통제공역 및 주의공역을 총칭하는 용어이다.
5. “경계구역”이라 함은 조종사 훈련이 밀집되거나 비정상 형태의 항공 활동이 수행되어지는 구역이다.
6. “태평양 군고도유보 전담부서(PACMARF : Pacific Military Altitude Reservation Function)”라 함은 미공군 태평양·인도양지역의 모든 미군 작전에 대한 고도유보 협의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2장 공역관리업무

제6조(공역관리업무) 본 훈령에서의 공역관리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역관리업무 절차의 수립 및 조정
2. 공역사용에 대한 검토 및 조정
3. 항공로의 설정 및 조정을 위한 검토 분석
4. 접근관제구역의 위임 및 회수·반환에 관한 사항
5.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6. 인천 ACC와 인접 ACC간 공역사용 협조에 관한 업무
7. 공역의 설정, 조정, 폐쇄에 따른 전산프로그램의 개발·수정에 대한 협조 및 검증

제7조(공역의 설정기준) 일반적인 공역의 설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역의 세분이 이용자의 편의에 적합할 것.
2. 공역이 활용에 안정성 및 효율성이 있을 것.

제8조(공역지정 목적 외 사용) 공역은 지정된 목적대로 사용되어야 한다. 지정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항공안전본부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공역의 구분)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공역의 구분은 항공법 제38조, 동법 시행규칙 제116조의2 제1항 별표 16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0조(관제공역의 위임) ①소장은 항공안전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관할하에 있는 공역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관련 접근관제소에 일정한 범위의 공역을 위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접근관제구역 위임에 관련한 세부사항은 인천ACC와 해당 접근관제소간 접근관제권한 위임에 관한 합의서에 정한다.

제11조(관제공역의 회수·반환) ①소장은 제10조 제1항에 의거 접근관제소에 위임된 접근관제구역을 다음 각 호의 상황 발생시 해당 접근관제소와 협의하여 회수·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관제시스템의 중대한 결함 또는 비정상 상황 발생 등으로 접근관제업무 제공능력을 상실하였을 경우
2. 비행점검 등의 결과에 의거 항공안전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접근관제업무 제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
3. 기타 위임된 접근관제구역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접근관제구역의 회수·반환에 관련한 세부사항은 인천ACC와 해당 접근관제소간 접근관제권한 위임에 관한 합의서에 정한다.

제12조(공역의 신설 등) ①공역과장은 공역위원회 운영세칙 제5조 제4항에 의거 실무위원회에 위임된 사항에 한하여 공역의 신설, 조정 및 폐쇄가 필요할 경우 인접공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공역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역의 신설, 조정 및 폐쇄가 우리 소외의 다른 기관과 연관되어 있을 경우 사전에 관계기관과 협의하도록 조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③공역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검토된 사항을 실무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 단,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항공안전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공역명칭 부여기준) ①항공로 및 보고지점의 명칭부여는 항공로 공역 설정기준(항공안전본부 고시 제2003-15호, 2003.9.1)에 의한다.

②기타 공역의 명칭은 문자와 숫자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여하여야 한다.

1. 공역의 종류에 관계없이 모든 공역명칭의 첫 문자는 Doc7910 (Location Indicators)에 의한 국가문자 RK를 부여한다.

2. 각 공역의 종류별로 비행금지공역은 “P”, 비행제한공역은 “R”, 위험공역은 “D”, 훈련공역은 “CATA”, 군작전공역은 “MOA”, 초경량비행장치비행공역은 “UFA” 를 각각 부여한다.

3. 공역의 종류에 관계없이 1~3자리의 중복되지 않는 숫자를 사용한다.

올바른 표기

잘못된 표기

P1, R2, D4, R5, D6, etc.

R1, R2, R3, etc.

P21, D22, R23, R24, D25, etc.

D1, D2, D3, D4, etc.

4. 기존 공역에 부여했던 공역명칭 번호는 1년동안 다시 사용할 수 없다.

5. 공역명칭은 Dash(-)나 사선(/)의 기호 등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6. 공역명칭은 각 공역의 위치를 용이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부여하여야 한다.

제14조(공역관련 기재사항 표기) ①공역에 사용되는 모든 지리적(위도, 경도) 좌표는 WGS-84 좌표체계에 의한 도, 분 및 초로 구성되는 전체 형식으로 표기하여야 한다.

올바른 표기	잘못된 표기
360600N	3006N
1263530E	12635.5E
370000N	37N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좌표나열은 좌상기점으로 부터 시계방향으로 표기하고, 최초 시작지점은 중복하여 표기하지 않는다.

③방위는 자북을 기준으로 표시한다.

④사용시간은 Coordinated Universal Time(UTC)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시간을 사용할 경우 국내시간(KST)을 표시한다.

⑤고도는 feet를 사용한다.

⑥거리는 해상마일(NM)을 사용한다.

⑦기타, 공역의 기재사항 표기에 관하여는 다른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훈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5조(공역지정 공고의뢰) ①공역과장은 공역의 신설, 조정 및 폐쇄가 실무 위원회에서 가결되었을 경우, 공역지정 내용이 항공정보간행물에 공고될 수 있도록 항공안전본부장(관제기획과장)에게 발행·의뢰하여야 한다.

②기타, 공역지정의 공고에 관련된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는 항공정보업무 규정(항공안전본부 훈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6조(전산시스템 개발의뢰) ①공역과장은 공역의 설정, 조정 및 폐쇄가 결정되면 전산프로그램 개발을 전산시스템개발위원회에 의뢰하여야 한다.

②공역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된 전산프로그램을 검증하여야 한다.

제3장 임시공역사용 처리절차

제17조(임시공역사용 승인) ①소장은 우리 소 관할 공역을 임시로 사용하고자 의뢰 받을 경우 사용가능 여부를 결정한 후 관계기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공역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 공역사용 승인 검토시 관계기관 및 부서에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공역과장은 승인된 임시공역의 범위, 사용시간 등 승인사항을 항공고시보로 고시하도록 항공정보과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④휴일, 공휴일, 주말 등 일과 후 부득이한 사정에 의한 임시 공역사용 요청이 있는 경우 관제실 근무팀장이 임시 공역사용승인을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처리절차는 제2항 내지 제3항을 준용하며, 공역사용 승인내역 사본을 공역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PACMARF 요청 임시공역사용 승인) ①소장은 미태평양사령부로부터 인천비행정보구역내 임시 공역사용요청을 접수시 제17조 제1항내지 제3항을 준용한다.

②기타 사항은 인천ACC와 미공군 태평양 작전지휘통제부와의 고도유보 조정절차에 관한 합의서에 의한다.

제19조(V11 항공로 사용 협조절차) ①소장은 V11 항공로를 11,000피트 이상을 사용하고자 의뢰 받을 경우 공군작전사령관에게 서면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②공역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협조한 사항을 요청부서, 관제과장 및 항공정보과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장 공역실무위원회 운영 등

제20조(실무위원회 구성) ①공역위원회 운영세칙 제5조 제4호의 규정에 의거 항공교통관제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위원장은 항공교통관제소장이 되고, 공역과장은 실무위원이 된다.

②소장은 실무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역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간사를 임명하여야 한다.

③기타 위원장 및 간사의 임무에 관하여는 실무위원회 운영세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1조(기능) ①소장은 공역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조정한다.

②실무위원회는 공역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해당 공역 사용자 외의 기타 공역사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현존 공역구조 일부의 조정에 관한 사항
2. 특수공역의 조정 및 폐쇄에 관한 사항(비행을 금지하는 공역을 제외한 기타의 공역의 신설이 다른 항공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경우를 포함한다)
3. 전반적인 국가 공역구조와 비행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국지적인 공항시설, 항공교통관제시설 및 항행안전시설의 신설, 변경 및 폐쇄에 관한 사항
4. 공역위원회가 지시한 사항과 1년 미만의 기간에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공역의 설정과 운용에 관한 사항
5. 기타 공역위원회의 소집이 곤란하며, 비행안전 목적상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22조(회의개최) ①실무위원회 회의는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소장은 회의개최 15일전까지 회의일시 및 상정안건 등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회의개최 통보시 적어도 3일전까지 회의참석자 명단(소속, 직급, 성명, 주민등록번호)을 항공교통관제소(공역과)에 통보될 수 있도록 의뢰하여야 한다.

제23조(안건의 제출) ①소장은 실무위원회에 심의할 안건을 회의개최 30일 전에 서면으로 제출 받아야 한다.

②공역과장은 각 기관/부서로부터 접수된 안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실무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안건 검토 시 자료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출 기관/부서에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④제출된 안건에 대한 실무위원회에의 상정여부는 위원장이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제24조(의안번호부여)①공역과장은 제23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상정하기로 결정된 의안은 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안번호는 연도 2자리, 차수 2자리, 일련번호 2자리로 구성하여 부여한다.

예) 02 - 07 - 10
연도 - 차수 - 번호

제25조(회의결과 보고) ①위원장은 회의개최 후 30일 이내에 그 회의결과를 공역위원회 위원, 공역실무위원회 위원 및 관계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은 국문과 영문으로 작성하고 용지종류, 용지여백, 글꼴 등은 다음사항을 준수하여 작성한다.

가. 용지종류 : A4(중)

나. 용지여백 : 위, 아래, 머리말 및 꼬리말 : 12.7mm,

왼쪽, 오른쪽 : 25.4mm

다. 글꼴/크기 : 신명조(국문 13포인트, 영문 12포인트)

라. 줄간격 : 국문 130%, 영문 100%

③위원장은 제1항에서 언급하지 않은 관계기관 및 부서에서 제출된 회의 안건에 대한 결과를 회의개최 후 30일전까지 당해 기관 및 부서에 그 가부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보 칙

제1조(교육훈련등) ①공역관리업무담당자는 공역관리업무 수행능력 향상을 위하여 공역관리업무에 필요한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 교육기관에 공역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과정이 개설되지 않았을 경우 외국의 교육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

②기타, 교육훈련에 관련된 기준 및 절차는 항공교통관제규정(항공안전본부 훈령)을 준용한다.

제2조(항공기탑승훈련등) ①공역관리업무담당자는 항공교통관제규정(항공안전본부 훈령)에 의거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국내·국제선 항공기의 탑승훈련을 받아야 하며, 항공교통업무 및 공역관리업무 기관을 방문하여야 한다.

②기타 항공기탑승훈련에 관련된 기준 및 절차는 항공교통관제규정(항공안전본부 훈령)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